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7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의자 : 강선영 · 박준태 · 유용원
이인선 · 이현승 · 성일종
임종득 · 이달희 · 이만희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수사의 시작·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